**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서**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가브린트(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협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식 라이센싱 계약한다.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서는 “갑”이 보유한 (이하 “원작”이라 칭한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을”이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전하고, 이에 대한 수익 배분에 대하여 계약한다.

**제 2 조 【 지적재산권 소유 확인 】**

1. “원작”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작”의 지적재산권 중 본 계약을 통해 “갑”이 “을”에게 이전하는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을”이 소유함을 확인한다.
3. “갑”은 필요시 “원작”의 지적재산권을 본 계약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관련 자료를 “을”에게 계약 이전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제 3 조 【 지적재산권 중 일부 권리 이전 】**

1. “원작”에 사용된 모든 표현 내용( 세계관, 배경 스토리, 등장인물의 설정, 도안, 그림, 캐릭터, 배경, 사운드, 배경음악 등의 모든 요소. 이하 “원저작물”이라 칭한다. )을 “을”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권을 부여한다.
2. “원저작물”을 활용한 2차저작물을 “을”이 제작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보유한다. “원저작물”의 2차저작물은 “원작”의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본 계약 이후에 “원작”과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2차저작물은 본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2차저작물의 범위는 중국어 저작물( 번체, 간체 포함 )에 한하며, 글로벌 권리에 대하여는, 우선협상권을 “을”에게 부여한다.
4. “을”은 “갑”으로 부터 보유한 권리를 제 3 자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제 3 자와의 계약 내용 중 수익배분 및 정산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갑”이 “원작”의 지적재산권 활용 수익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수행한다.
5. “갑”이 현재 “원작”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을”이 보유한다.

* 아 래 –
  1. “원작”의 웹툰 저작권
  2. “원작”의 웹툰 출판권

**제 4 조 【 계약자의 의무 】**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원작”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 권리 이전을 수락한다.
2. “을”은 본 계약을 체결 후, 라이센스 계약금을 지급하고, “원작”의 지적재산권 중 이전받은 내용을 사용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한다.
3. “을”은 이전받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제 3 자와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세부 수익 배분 조건 및 배분 방식을 10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한다.
4. “을”은 2차저작물을 통하여 “을”에게 수익이 실제 지급이 된 이후, 매 1개월 단위로 수익 금액을 정산하여 통보하고, “갑”에게 정해진 수익 배분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5. “갑”과 “을”은 본 계약 이후, 기타 다른 사업 진행 시,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조 【 계약 세부 조항 】**

1. 계약의 기간 : 년 월 일까지로 정한다.
2. 계약의 범위 : 제 3 조 [지적재산권 중 일부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라이센스 비용 및 지급 시기 : 총 OOOO 만원을 라이센스 비용으로, 본 계약 체결 후 OO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4. 수익 배분율 : “갑”이 이전한 권리를 사용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 3 자에 의해 제작된 2차저작물의 수익 중, “을”에게 지급되는 수익의 OO%를 “갑”에게 지급한다.
5. 수익 배분 방식 : “갑”이 이전한 권리를 사용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 3 자에 의해 2차저작물이 제작되어 상용화 된 후, 관련 수익이 “을”에게 지급되기 시작하는 일시부터, 매월단위로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고, 3개월 단위로 “갑”이 지급받을 금액을 정산하여, 매 분기 15일 이전에 “갑”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 보 안 】**

1. 본 계약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공유되는 모든 정보, 자료는 보안 조치를 통해서 외부누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누출이 될 경우, 이는 해당 계약자의 계약 파기 요건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만약, 필요에 따라 보안을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갑”과 “을” 상호간의 승인을 얻을 경우 가능하다.

**제 7 조 【 연락 및 협조 】**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연락 및 협조는 “갑”의 대표 와 “을”의 대표로 정한다.

**제 8 조 【 개정 및 종료 】**

1. 본 계약서의 개정 및 추가 계약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수정, 보충한 협의는 본 협의서와 불가분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e
2. 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완료된 이후, 재계약 및 추가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은 해당 당사자 “갑”과 “을”에게 있다.

**제 9 조 【 계약 중도 해지 】**

1. 본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를 계약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지키지 않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원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당 당사자에 의해 계약 중도 해지가 되는 것으로 팑단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갑”에 의해 계약 중도 해지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을”이 계약 중단으로 얻게되는 손실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에 의해 계약 중도 해지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미 지급한 라이센스 비용의 3배 + “을”이 수익 배분하기로 예정된 정산 금액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으로 계약 중도 해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 10 조 [기타 분쟁조정방식]에 의해 해결한다.

**제 10 조 【 기타 분쟁조정방식 】**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협의 하에 해결하며, 협의불가시 “갑”소재지 재판소에서 처리 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서의 유효한 성립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를 각각 2통을 작성하며, 각각 서명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